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66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김선민
서영석 · 김현정 · 임미애
허영 · 남인순 · 김남희
전종덕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u>20년</u>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 ----- ----- ----- ----- ----- ----- ----- -----10년----- ----- -----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

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
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
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
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의3. (생 략)

<신 설>

립권자 등) ① -----

-----10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

6. ~ 14. (생략)	<u>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u> 6. ~ 14. (현행과 같음)
---------------	--